

## 내국인의 신규특허등록건수 외국인 크게 앞질러

산업재산권중 핵심기술인 특허기술에 대한 내국인의 연도별 신규등록건수가 매년 증가되어 2001년도에는 외국인에 의한 등록건수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도에 신규로 설정된 특허등록건수중 내국인에 의한 등록비율이 11.4%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15.4%, 1990년에는 32.9%로 증가하다가 1995년에는 52.5%로 외국인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말 현재 63.0%로 외국인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무너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술중시정책의 추진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명을 장려하고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권리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특허청의 역할에도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로 선진국의 기술을 단순히 응용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도 내국인에 의한 특허등록건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리라고 예상된다.

한편, 2001년도 내국인중 특허다등록업체의 순위는 삼성전자가 3,219건으로 1위이고, 엘지전자가 1,895건으로 2위, 하이닉스반도체가 1,873건으로 3위이며, 현대자동차와 삼성에스디아이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일본전기(NEC)가 766건으로 1위이고, 인터네셔널

비지네스 머신즈가 482건으로 2위, 소니가 328건으로 3위이며, 미쓰비시 전기와 도시바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특허민원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 - 전자정부구현 특허청이 선도 -

특허청은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특허 관련 민원인은 지금까지는 출원서 등 일부 구비서류에 대하여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서류는 물론 이의신청서류·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인방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원인이 웹(Web) 환경에서 각종 제출서식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문서를 작성할 때 상용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출원을 위한 사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발명자·변리사 등 특허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청은 전자정부구현을 선도하는 정부부처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1. 2002년 3월 1일부터 특허민원서비스 온라인 체제 본격 가동

특허청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중점 시책에 부응하여, 모든 특허민원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동 서비스는 특허청이 지난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 개통을 통해 이룬 전자민원서비스 수준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종전에 다소 미비했던 특허민원서비스 환경을 명실상부한 고객위주의 온라인체제로 재편한 것으로 평가된다.

### 2. 민원인 편의 위주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우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제출 등 사전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제출 가능한 서류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 신고가 종전에는 방문 및 우편에 의하여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둘째, 서면으로 제출 및 통지가 불가피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및 통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셋째, 각종 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서류(원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였다.
- 넷째, 이해당사자 등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던 부분 등 첨부서류를 여러 통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였다.
- 다섯째, 심판 및 이의신청절차에 대하여도 포괄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3.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이용 편의성 제고

전산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정된 제도 및 사용자의 편의가 반영된 전자출원소프트웨어가 전면적으로 배포되는 등 여려 부문에서 민원인 편의 위주의 시스템이 개통된다.

- 첫째, 특허청은 정부의 공인인증서 발급 확대방침에 부합되도록, 특허전자문서 제출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특허문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웹(Web) 환경에서 각종 제출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작성기가 배포된다. 새롭게 배포되는 서식작성기는 기존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단순화하여 개인출원인도 쉽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특허문서 작성을 위하여 민원인은 특허청에서 배포한 별도의 워드프로세서(K-editor)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한글 및 MS-WORD 등 상용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특허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종전에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특허청에 사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에서 필요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발명자, 변리사 등 특허 민원인은 지금까지는 출원서 등 일부 서류만 온라인 제출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선된 서비스를 통하여 출원서류는 물론 사전등록서류·각종 증간서류·이의신청서류·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특허청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서비스의 확대실시와 함께 각종 통지서발송사항·기간도래사항·등록된 권리의 소멸예고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메일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통보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게 되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되는 문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는 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할 예정이다.

### 4. 중앙행정기관 최고, 전 세계 특허청중 최초 서비스

금번 특허청의 민원서비스 개선은 작년 7월에 시행된 전자정부법을 근간으로 특허업무절차 전반을 전산화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이 특허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자문서 제출을 지원함에 따라, 특허청내 사무처리환경은 전자문서 유통을 기반으로 완전 온라인화가 되어 특허청은 물론 관련 기관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 지원을 통한 특허업무절차 전반의 온라인화는 현재 전자출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특허청중에서는 최초로 채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 정부기관 및 외국 특허청의 업무전산화 및 사무처리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은 물론이고, 이의신청, 심판서류 등 각종 민원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특허행정시대가 활짝 열림에 따라 대민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청은 전자정부구현을 선도하는 정부부처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기술기반 경제 바로미터, 특허정보 뜯다

### - 특허청, 특허통계분석정보 생산 강화 -

#### 1. 기술변화와 발전방향 예측, 지식 확산 등 특허통계분석 중요성 부각

- o 과거, 특허통계는 주로 경쟁력 순위 매김

이나 특히 몇 건 획득 등과 같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활용되었다.

- 그러나 최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통계를 국가와 기업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o 특히 통계가 중요해진 이유는 경제의 기술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책이나 기업 경영의 목표, 문제점, 조기 경보의 관점에서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생겼기 때문이다.
- 아울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국제특허 기술분류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평가 및 발전 방향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o 특히, OECD의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은 특허통계와 관련한 최근 자료에서 특허통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술평가와 예측이외에도
- 지식의 국제적 확산 및 기초과학의 상업화 수준 진단,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전략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2. 특허청, 올해부터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국제특허기술 세부 분류 618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별 통계 작성 및 분석 강화

- o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부응하여 특허청은 올해부터 기존의 특허통계를 세분화 및 확대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 향후 미국, 일본 등으로까지 통계 작성 및 분석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o 먼저, 올 상반기 중에는 80여만 건의 국내 특허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가장 급속도

로 성장하는 기술이나 외국기업이 국내에 가장 많이 출원한 기술 등을 분석하여 관련기관이나 기업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 아울러, 기술분야별 통계는 기존에 국제 특허기술분류상 대분류에 속하는 클래스 수준의 120개 기술분야 통계 작성에서 클래스 수준보다 한단계 세분화된 수준인 서브클래스 618개 기술분야 통계를 작성하여 기술 통계만으로도 기술 발전 방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별 통계는 그 동안 국내특허출원이 미미하여 기타로 처리하였던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의 국가까지 포함한 통계를 작성하여 이들 국가의 국내 기술 진입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에 기여

- o 특허청은 기초특허통계정보가 미시적으로는 기업이나 개별 연구소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 o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를 최적 분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국제특허출원 절차 편리해진다

- o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CT)이 개정됨에 따라, PCT 출원의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에 따라 20개월과 30개월로 달리 운영되어 온 PCT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30개월로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o 2001. 9월 개최된 제30차 PCT 동맹총회에서 회원국들은 PCT출원에 대한 국내단계진입 기한을 30개월로 통일(현행은 국제예비

심사 청구시 30개월, 미청구시 20개월) 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며 각 국에서의 발효시점을 개정조약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 o 본 조약의 개정 내용이 특허법에 반영될 경우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종전의 20개월 보다 10개월이 연장되므로 PCT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를 여유있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o 또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줄어들어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o 특허청에서는 조약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 WTO 산하 무역협상위원회(TNC) 의 정식출범

\* 2001년 11월 세계 140 여개국의 각료들이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21세기 새로운 자재권 질서 구축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뉴리운드 이슈에 대해 2005년 1월을 시한으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1. 도하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Harbinson WTO 일반이사회 의장 주재로 2002. 2. 1(금) 15:00 - 18:10간 개최된 제 1차 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에서는 가이드라인(section B)에 대한 일반이사회 의장

성명내용을 승인하고, 의장의 선임, 협상구조, 회의 일정 등 agenda item(section C)에 동의하였음.

## 가. 원칙 부분

- TNC는 협상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WTO 일반 이사회에 권위 하에 설치되고, 기존 WTO기구와 독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기구가 아님.
- WTO의 작업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일반 이사회가 담당하며 TNC는 정기 일반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 TNC 및 협상기구의 회의록은 3개 공용 어로 신속히 작성, 배포 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동시에 회의가 개최되어서는 안 되며, TNC는 협상기구의 회의일정 작성 을 감독함.
- 상급기구에 대한 정기 보고시 컨센서스 를 반영해야 하며, 컨센서스를 이루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슈별 상이한 입장 을 반영해야 함.
- 일반이사회는 신·구 사무총장간의 업무 교대와 관련, TNC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나. 의장은 직책에 근거하여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각료 선언문에 설정된 2005. 1. 1 까지로 함. 겸직이 향후 선례가 되지 않음을 이해함.

## 다. 협상구조

- TNC는 다음 구조를 채택함.
  - 농업, 서비스, DSU의 개선 및 명료화, 무역-환경, TRIPs(포도 주 및 중류주의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설립문제)

는 기존 기구의 특별회의에서 협상을 담당함.

- 무역규범 및 비농산물 시장 접근은 각각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함.
- 이행 문제 협상은 각료선언문 및 이행 관련 결정문에 따라 적절한 기구들에 서 담당함.
- 개도국에 대한 특별취급이 WTO 협정의 주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협상 및 작업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 하며, 기존 특별취급 조항의 강화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운영 가능하게 할 목적인 재검토는 무역개발위원회(CTD) 특별 회의에서 담당함.
- 일반이사회 의장은 세부 협상기구 의장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되, 선진국과 개도국간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함.
- 세부 협상기구의 의장의 임기는 5차 각료 회의시까지로 하되, 동 회의에서 재검토하며, 주로 제네바 주재 대표중에서 선임하되 정부가 지정한 인사도 고려할 수 있음.

라. TNC는 2,3개월에 1회의 회의를 하되 필요시 추가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기초하에 TNC에서 자체 회의일정을 정함.

## 2. 평가

- 가. TNC가 출범하고 산하 협상구조가 결정됨에 따라 DDA 협상을 본격 개시할 기반이 마련됨.
- 나. 약 2주간의 진통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국제사회에 좋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예 : 양자간, 소수국간 비공식 협의 및 의장의 자기책임에 중재안 작성에 대한 제한 등)가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미국과 유럽, 소프트웨어 특히 문제로 갈등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소프트웨어(S/W)의 특허권 획득 및 무형 상품(Virtual goods)의 인터넷 거래 등을 두고 심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EU는 15개 회원국마다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 특허 규칙을 유럽 표준안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아래 미국보다 특허 획득 기준을 크게 강화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특허 규칙(안)'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대국인 미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S/W 업체들은 유럽에서 제품 특허를 획득하려면 반드시 해당 제품이 새로운 기술 혁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S/W가 기계나 운영시스템에 장착됐을 때만 특허권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응용해 S/W를 만들 어도 특허권을 줄 뿐만 아니라 기계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훨씬 강화된 특허 기준이다.

특히 이 규칙이 실행되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의 원-클릭(One click) 인터넷 쇼핑 시스템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인정받지만 유럽에서는 기술 혁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비즈니스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EU가 특허 획득 자격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당

한 로비를 해왔던 미국 S/W 업체들은 이런 EU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IBM과 MS 등 미국의 거대 S/W 업체를 대변하는 조직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동맹의 유럽 공공정책 이사인 프란시스코 링고런스는 'EU 입안자들이 S/W 산업을 몇 단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규칙안을 마련한 유럽 위원회 프리츠 볼커스타인 위원은 '미국측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규칙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미국의 특허 규칙과 상대적으로 특허권 보호에 너무 소홀했던 유럽측의 내용을 적절히 조정한 것으로 예상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EU산하 유럽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 규칙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려면 앞으로 수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S/W 산업의 강력한 로비 등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음악 ◆컴퓨터 게임 등 무형의 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결정함으로써 유럽과의 전자상거래 확대를 추구해온 미국 측이 크게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변리사, 변호사 출신이 52% '굴려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변호사들이 대거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업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

대한변리사회([www.kpaa.or.kr](http://www.kpaa.or.kr))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변리사 수는 총 1769명으로 전년 동기의 1270명에 비해 499명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전체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구성별로 보면 시험출신이 542명으로 31%, 특허청 출신이 309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변호사 출신은 918명으로 무려 52%로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숫자면에서 최대 세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난 2000년의 경우 변리사는 전체 1270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513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했고 시험출신이 38%(475명), 청 출신 22%(281명)의 구성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1년사이에 시험출신과 청출신이 18명과 27명이 각각 늘어난데 반해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405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간단한 신고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데다 변리사회 강제가입이 임의로 바뀌면서 납부해야 할 회비 부담이 사라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한변리사회에 신규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변호사 출신이 변리사가 405명이 늘어난데도 3명만이 가입했을 뿐이다.

대한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며 “그 수가 폭증한 시점은 변리사회 강제 가입 규정이 임의로 바뀐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변호사들이 대거 양산돼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변리사업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굵직굵직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변호사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

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 WIPO, “신규 최상위 도메인 허용으로 분쟁 급증”

지난해 닷인포(.info), 닷비즈(.biz) 등 신규 최상위 도메인(gTLDs) 7개가 허용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분쟁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밝혔다.

WIPO의 도메인 명칭 및 전자상거래 담당 사무차장인 프란시스 구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어 등을 통해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도메인 명칭의 국제화로 인해 도메인을 사용할 의도 없이 투기의 대상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에 새로운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신규 최상위 도메인은 닷아에로(.aero), 닷코프(.coop), 닷뮤지움(.museum), 닷네임(.name), 닷프로(.pro) 등이다.

구리 사무차장은 닷컴(.com), 닷네트(.net), 닷오르그(.org) 등 기존의 최상위 도메인 등록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00년 1천841건에서 지난해 1천506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신규 최상위 도메인 허용 이후 닷인포의 경우에만 1천579건의 분쟁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4분기에만 분쟁 건수가 배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닷인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2월 말까지 미국의 주관업체인 어필리어스(Afilias)사를 통해 접수된 건수를 포함해 1만 3천~1만 4천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WIPO는 지난 99년 12월 국제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구인 ICANN에 의해 국제도메인분쟁에 관한 단일해결정책(UNRP)이 도입됨에 따라 제네바 본부내에 분쟁중재 및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 접수된 분쟁건수는 모두 3천348건에 이르고 있다.

WIPO의 분쟁해결 서비스는 현재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영어 이외에 한국어 등으로 접수된 도메인 분쟁은 2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2건에 대한 판정이내려졌다.

WIPO는 2003년말까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3분의 2 가량이 비(非)영어 사용자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처 연합뉴스

## 변리사자격증 합격해도 일자리 없어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기술자격증의 꽃으로까지 불리던 변리사업계에 취업 비상이 걸렸다.**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38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200명 가운데 40여 명이 아직 실무수습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변리사는 시험합격 후 1년 동안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실무연수와 수습기간을 거쳐야만 변리사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취업 첫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 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http://www.kpaa.or.kr))에는 수습할 곳을 찾지 못해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했지만 취업도 못한다면

누가 이 시험을 준비하겠는가. 적어도 취업한 다음 치열한 실력 경쟁에서 낙오자가 있는 것은 이해가 있지만 변리사시험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사람이 수두룩 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변리사들이 수습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은 변리사 합격자가 대폭 늘어난데 반해 수요처인 변리사 사무소에선 인력 변화가 없어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변리사 선발인원은 95년 30명에서 60명(96년)으로 늘기 시작해 2000년 120명, 2001년 38회에는 200명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에도 최소 200명 이상의 변리사들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취업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영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이공계 기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리사가 전문영역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과목조정 △번호사 자동 자격부여제도 보완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면제 범위의 조정 등 전반적인 변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 나노테크 특허 정보 서비스 제공

특허 정보 서비스의 영 다우엔트 인포메이션(런던)은 나노테크놀로지(초미세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특허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세계 약 40개국의 특허발행기관이 공개한 공보를 영어로 번역해서 연간 약 80회, 전자메일과 CD-ROM 등으로 전달한다.

나노테크 전문 특허 속보 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본에서 시작되며, 영국에서는 3월부

터 제공된다.

박사졸업자와 변리사의 자격을 갖는 약 400명의 전문가가 최근 공개된 공보를 카본 나노튜브와 초미립자 등의 기술항목별로 분류한다. 그들은 각 특허의 응용범위와 이론적인 설명을 붙이는 등 세계의 나노테크 특허의 현상과 최신 경향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이 기업에 따르면, 2000년에 나노테크 분야에서 새롭게 공개된 특허는 약 1300건(복수 국가에서 출원한 중복을 제거)으로 98년의 약 2.5배로 급증했다. 각국 정부의 연구보조금이 증가하면서, 특허출원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가격은 연간 25만엔이다.

(출처 낫케이산업신문)

## 유럽의 신소프트웨어 특허 법안 논란에상

유럽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특허 인가에 관해 미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부과되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 가맹 15개국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규칙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허를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에는 특별한 기술혁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가 적용되는 대상은 머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혹은 운영 체제와 연결된 소프트웨어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책정을 담당한 역내 시장 담당 위원장인 FRITS BOLKESTEIN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특정 머신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와 기술 혁신을 포함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하는 미국의 특허 모델과는 다르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비판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Bolkestein은 이 법안이 공표된 후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 가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전에 확실히 법안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한편, Bolkestein은 비지니스 방법에까지 특허를 인정하는 미국의 특허 모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그는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에게도 신선하고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방침은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에 대한 법적인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금지될 수 있다.

특허는 20년간 완전한 독점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특허 소유자는 그 권리를 상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하는 권리은 특허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보호되는 기간은 특허법보다 길다.

향후 유럽위원회의 법안은 유럽 의회의 검토를 거친 후, 후정될 것으로 보인다. White & Case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유럽의 정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Thomas Tindemans는 이번 법안이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수정이 이뤄질 것은 확실하며, 다만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미국 특허 정도로 높은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로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업체의 단체인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의 브뤼셀 지사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실망의 뜻을 표시했다.

BSA의 유럽 담당 부장인 Francisco Mingorance는 자신들이 예상하고 있던 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은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업체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BSA는 아이크로소프트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부문 특허 인정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mazon.com의 원클릭 인터넷 구입 시스템과 같은 특허는 기술 혁신이 아니고 단순한 비지니스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5월 발효

인터넷 상의 음악 해적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조약이 오는 5월 정식 발효된다.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인터넷 저작권 보호조약의 하나인 'WIPO 실연 및 음반 협약(WPPT)'이 지난 20일 온두라스가 조약 체결 국가 중 30번째 국가의 비준이 완료된 후 30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PPT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5년 전 체결된 조약으로 인터넷에서 음반 혹은 실연 음악을 저작권자의 허

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 음반업계는 이 조약이 "인터넷 상의 음악 유통에 걸림돌인 해적행위를 봉쇄해 인터넷 음악 보급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음반사업협회의 제이 버만 회장은 "이 조약은 디지털 시대에 음반사와 공연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첫 국제적 공조의 틀로 온라인 음악 유통에 필수적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독립 및 메이저 음반사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WIPO는 WTTP가 작가와 출판자를 위한 또 다른 저작권 보호 국제조약인 "WIPO 저작원 협약"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 저작권법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저작권협약(WCT)은 지난 12월 7일 가봉이 30번째로 비준을 마쳐 오는 3월 6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약은 WPPT와 함께 온라인 저작권 조약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WIPO는 조약 비준국은 두 조약이 발효되면 "창작자,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작품이용 방식을 통제하거나 작품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WPPT는 "예술가와 음반사에게 인터넷에서 작품의 무단 복제 방지 기술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WPPT를 가장 먼저 비준한 나라에 속한다.

이 조약은 비준한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유럽연합은 15개 회원국 모두가 국내 입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관계로 비준이 늦어지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저작권자 이익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미 음반산업이 불법 해적행위로 입는 피해액이 지난 2,000년 18억 달러에서 지난해에 2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추산했다.